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086
------------	-------

발의연월일 : 2018. 10. 26.

발의자 : 황주홍 · 원유철 · 장병완

송옥주 · 이찬열 · 이용주

박주현 · 김중로 · 김종회

정동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는 지난 2006년부터 심사요청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법제처 사업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의 용어순화에 치중하고 있어, 국회가 기존 법률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외래어, 외국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의 전면적인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3항).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보장구(補裝具)에”를 “장애인 보조 기구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장구”를 “장애인 보조 기구”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u>보장구(補裝具)</u>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③ 제1항에 따른 <u>보장구</u> 급여 및 제2항에 따른 추가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① -----</p> <p>-----</p> <p>----- 장</p> <p><u>장애인 보조 기구에-----</u></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장애인 보조</u></p> <p><u>기구-----</u></p> <p>-----</p> <p>-----.</p>